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18가단5020449(본소), 2019가단50552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구상금)반소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변호사 유경재, 허선헌, 박성국, 박미리, 김세원

피 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이희숙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양선화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반소원고) D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D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에게 20,7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4.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1) 그랜드 스타렉스(12인승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담보내용 :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D은 2017. 10. 1. 01: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초구동 소재 동해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F, G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가 부상을 당하였고,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E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 및 대물배상 보험금 등으로 합계 20,737,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D에게 구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D은 2017. 11. 13.과 2018. 5. 25. H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는「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위 약관 제14조 제7호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3, 19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 회사로부터 710만 원을 주고 임차하여 전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면서 F, G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 기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대인배상 I에 기한 E, F, G의 손해배상금으로 각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 I과 자기신체사고에 기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서도 같은 결론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속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D의 주장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에게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 D을 알선하였고 이에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고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 D은 2017. 4. 1. 피고 회사와 렌터카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12인승 승합차인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고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피고 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다(피고 D은 2021. 11. 22.자 준비서면에서는 자신이 피고 회사와 장기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고 피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기사 포함한 렌트카 주문을 받아 피고

D에게 지시를 내리는 렌트카대리운전계약 및 장기임대차계약의 복합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I가 J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7. 9. 30.부터 2017. 10. 1.까지 48시간 동안 대리운전기사 포함한 비용을 40만 원으로 정하여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J의 법인카드로 위 40만 원을 피고 회사에 결제하였고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면책조항을 주장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D이 H에게 위 손해배상금 20,73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D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5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D은 2017. 10. 11.

원고에게 ‘자신이 2017. 4. 4.부터 1년 장기 렌트를 임차사용 조건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710만 원 상당에 렌트료를, 자동차보험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친구 K의 연락을 받고 동승객 2명(모르는 사이)을 태우고 서울에서 동해시까지 왕복하는 비용을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차량으로 승객 또는 물건을 지인을 통하여 운행 운반하여 주고 비용을 여러 번 받고 운행한 사실은 있었으며 … 본인 생각은 11인승 이상의 렌트차량은 렌트차량과 대리기사를 요청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고 운행하여도 무방한 줄 알고 있으며 …’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이후 피고 D은 2018. 2. 7.경 원고의 직원인 L이 자신에게 허위의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8. 2. 27.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③ 또한 피고 D은 위 확인서를 위 L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는 피고 D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장기렌트계약기간, 렌트비 금액, 수차례의 유상운송 시인 등과 같은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는 사고 당일 위 L에게 ‘지인 소개를 통해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었고 출발 전 피고 D에게 40만 원을 지급(왕복)하였다’는 취지의 동승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⑤ 피고 D이 2017. 4. 3. 피고 회사에게 합계 14,859,16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위 확인서에서 언급한 렌트료 및 자동차보험금 명목으로 보이는 점(피고 D은 위 돈이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피고 D로부터 위 돈을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렌트 차량의 선납보증금 중 일부로 받았고 피고 D이 현재도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 중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답변하자 그 후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선납보증금의 일부라는 주장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⑥ 피고 D은 I가 2017. 10. 19.에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를 카드로 결제하였다면서(피고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2017. 11. 16.자 피의자신문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당시에는 ‘는 좀 아는 사이고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진술하였다) 카드결제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를 렌트 당일이 아닌 18일이나 지난 후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의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M의 대표 J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기사 포함 렌트카를 찾아 피고 회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을 빌리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을 더욱 믿기 어렵다), ⑦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6회 정도 돈을 송금한 내역은 있으나 달리 피고 회사가 대리비를 지급하여 왔다고 볼 만한 회계장부나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⑧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전혀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나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꼭 아셔야 할 사항 - 보험에 가입하실 때’라는 항목으로 제6항에서「유상운송 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997. 12. 13. 전부개정 이래로「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트차량)의 임차인이 그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현행 제34조, 제90조 제6의2호), 피고 회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자동차대여사업자」인 점,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 기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대인배상 I에 기한 E, F, G의 손해배상금으로 각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배상 I과 자기신체사고에 기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서도 같은 결론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D이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 D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종채

별지

목 목

1. 피보험차량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2. 보험자 : 원고

3. 피보험자 피고 C 주식회사

4. 보험종목 : 영업용

보험기간 : 2017. 4. 4. ~ 2018. 4. 4.

계약번호 : N

담보내용 :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5. 사고내용

사고일시 : 2017. 10. 1. 01:00경

사고장소 : 동해시 초구동 소재 동해고속도로

사고경위 : 피보험차량이 선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추돌함 끝.

1) 2017. 11. 3.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3 생략)로 변경되었다.